


특허청


미래의 세상이

**튼튼한 지식재산 생태계,
기업성장 전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남게 들었습니다
바르게 알려겠습니다**

보도자료

www.kipo.go.k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문 의	상표디자인심사국 디자인심사정책과	과 장 이인수 042-481-5331 서기관 전호범 042-481-8103
	2014년 5월 13일(수)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5월 12일(화)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미국, 일본 디자인출원 쉬워진다

- 미국, 일본 5월 13일부터 국제디자인출원제도 시행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미국과 일본이 5월 13일부터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이하 ‘헤이그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국제디자인출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헤이그협정이란 다수의 개별국가에 직접 출원하지 않고,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나라에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조약을 말한다.

종전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국가로만 국제디자인출원이 가능하였으나, 금번 미국과 일본의 국제디자인출원제도 시행으로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일본에서의 디자인 출원도 가능하게 됨으로써 우리 국민의 해외 디자인권 확보가 훨씬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 동안 국제디자인출원제도는 주로 신규성 등 등록요건에 대한 사전심사가 없는 유럽국가 위주로 운영되었으나 작년 7월 1일부터 실제 심사를 하는 주요 국가 중 우리나라가 처음 도입함으로써 제도시행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바 있다.

* 내국인의 국제디자인출원 : 125건('14. 7. ~ 12.) ⇒ 375건('15. 1. ~ 4.)

외국인의 한국지정국제출원 : 984건('14. 7. ~ 12.) ⇒ 840건('15. 1. ~ 4.)

국제디자인출원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각 국가마다 출원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없고, 하나의 언어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비용이 저렴하며, 등록된 디자인의 권리관계 변동 등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등 개별국가에 직접출원하는 것보다 매우 유리하다.

한편, 미국으로 출원하고자 하는 출원인은 발명자(창작자) 선언서 등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고, 수수료는 출원할 때와 설정등록할 때 2단계로 나누어 납부해야 한다. 또한, 일본으로 출원할 때는 육면도법에 따라 도면을 제출하고 도면명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함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중국이 헤이그협정 가입을 위해 현재 특허법 개정절차를 밟고 있으므로 향후 2 ~ 3년 내 가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면서 “특허청은 미국과 일본의 가입을 기점으로 다양한 국제출원정보, 각 국의 도면요건, 심사사례 등을 적극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외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미국과 일본의 가입내용

□ 미국·일본의 헤이그협정 가입

- 심사주의 국가인 미국과 일본이 '15. 2. 13. 헤이그협정(1999년 개정협정) 가입서를 기탁. 그로부터 3개월 후인 '15. 5. 13.부터 발효
- 미국일본의 가입으로 국제디자인출원제도는 더욱 활성화될 것이 기대

□ 미국의 가입내용

추진경과	헤이그협정 가입 승인('07.12. 상원) → 미국특허법 개정('12.12, 대통령 서명) → 하위법령 등 개정('13.11~'14.12.) → 가입서 기탁('15.2.13.) → 발효('15.5.13)
------	---

- 미국 지정 건은 창작자 성명, 청구범위를 필수로 기재해야 함
- 지정수수료(출원료+ 1~5년분 등록료)를 국내출원에 상당한 금액으로 정함. 이 중 출원료 상당 금액은 국제출원시, 등록료 상당 금액은 등록결정 후 납부하도록 납부시기를 2단계로 구분
- 공개연기를 불허하므로 공개연기를 신청하면서 미국 지정 불가
- 복수디자인출원은 1디자인 1출원 원칙 위반이므로 허용되지 않음. 복수디자인출원시 1디자인마다 분할출원을 해야 함
- 권리이전에 대한 국제등록의 효력은 그 증명서류(양도증서 등)가 출원인에 의해 USPTO에 제출될 때까지 부인됨
- 디자인권의 최대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5년
- 창작자가 출원인과 다른 경우 국제출원이 출원인에게 양도되었다는 취지의 진술 또는 문서가 첨부되어야 함
- 미국법상 공개 전에 안보목적상 비밀해제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국제출원서의 WIPO 제출기간을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 신규성 등 실체심사를 하는 기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거절이유 통지기한을 6개월에서 12개월(공개일로부터 기산)로 연장

□ 일본의 가입내용

추진경과	일본의장법 개정('14.4.) → 헤이그협정 가입승인('14.5.) → 하위법령 등 개정(~'15.2.) → 가입서 기탁('15.2.13.) → 발효('15.5.13)
------	---

○ 지정수수료를 국내출원에 상당한 금액으로 정함

○ 복수디자인출원을 허용.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은 한정열거된 56개 품목(JPO 고시)에 대해서만 허용

* 56개 품목에 없는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은 1디자인 1출원 위반으로 거절

○ 디자인권의 최대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20년

* 일본은 국제출원시 시행 초기 서면출원만 가능. '17년경 전자출원 가능

□ 우리나라 국제디자인출원 접수현황 (2014. 7. ~ 2015. 3.) >

구분	2014년 7~12월		2015. 1~3월	
	출원	디자인	출원	디자인
내국인의 국제출원	61	125	105	295
한국 지정 국제출원	276	984	202	736

붙임 2 한국·미국·일본의 가입내용 비교

구분	가입내용	근거조항	한국	미국	일본
1	계약당사자 수입인 개별지정수수료 적용 여부	협정 제7조(2)	○ (일부심사-표준, 심사-개별지정료)	○ (개별지정료, 2회 분할납부)	○ (개별지정료)
2	디자인권의 보호기간	협정 제17조(3)(c)	○ (출원일 후 20년)	○ (등록일 후 15년)	○ (등록일 후 20년)
3	거절통지기간의 연장 여부	규칙 제18조(1)(b)	○ (일부심사 6개월, 심사 12개월)	○ (12개월)	○ (12개월)
4	특허청을 통한 간접출원의 금지 여부	협정 제4조(1)(b)	× (간접출원 허용)	× (간접출원 허용)	× (간접출원 허용)
5	자기지정 금지 여부	협정 제14조(3)	×	×	×
6	국제출원의 추가적 필수사항(도면의 설명 등)의 기재 여부	협정 제5조(2)(a)	×	○ (창작자, 청구범위 기재 필수 선언)	×
7	디자인의 단일성 요건(1디자인 1출원 등)의 충족 요구 여부	협정 제13조(1)	× (복수출원 허용)	○ (복수출원 불인정)	○ (복수출원 허용. 한 벌 물품은 일부만 인정)
8	공개연기 불인정 여부	협정 제11조(1)	×	○ (공개연기 불인정)	×
9	소유권 변경 등재의 효력 부인 여부	협정 제16조(2)	○ (증명서류 제출요구)	○ (증명서류 제출요구)	×
10	국제출원인(출원인=창작자)에 관한 특별요건 요구 여부	규칙 제8조(1)	×	○ (창작자 진술 요구)	×
11	특정 도면의 요구 여부	규칙 제9조(3)(a)	○ (글자체, 한벌물품)	×	×
12	국제출원서 제출기한의 연장 여부	규칙 제13조(4)	× (1개월)	○ (6개월)	× (1개월)